

2023년 상반기 DB손해보험 현황

기간 : 2023.1.1-2023.6.30

DB손해보험(주)

본 공시자료는 보험업감독규정 7-44조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목 차

I. 주요 경영현황 요약

II. 재무·손익

III. 자산의 건전성

IV. 자본의 적정성

V. 수익성

VI. 위험관리

VII. 기타 일반현황

VIII. 재무제표

I. 주요 경영현황 요약

1-1. 주요 경영지표

(단위 : 억원, %, %p)

구 분		당기 (23.2Q)	전년 동기 (22.2Q)	증 감
재무·손익	자 산	442,266	454,006	(-)11,740
	부 채	356,636	364,868	(-)8,232
	자 본	85,630	89,138	(-)3,508
	당기순이익	9,181	9,370	(-)189
건전성	지급여력비율 (경과조치 전)	219.1	-	-
	지급여력비율 (경과조치 후)	219.1	-	-
수익성 비율	운용자산이익률(A/B)	3.58	3.42	0.16
	영업이익률	11.67	5.27	6.40
	총자산이익률(ROA)	4.12	4.10	0.02
	자기자본이익률(ROE)	20.26	23.15	(-)2.89

- * 지급여력비율은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수치만 산출 가능 (전 생·손보사 공통사항)
- * 당사는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아 경과조치 전·후 금액 및 비율이 동일함
- * 주요변동요인 : 회계기준의 변경 (항목별 적용 회계기준 하단 참조)
- * 재무·손익 : 22.2Q IFRS17/IAS39 기준, 23.2Q IFRS17/9 기준
- * 운용자산이익률에서 A는 투자이익에 해당하며, B는 경과운용자산에 해당함
- * 운용자산이익률, 영업이익률 :
22.2Q IFRS4/IAS39 기준
23.2Q IFRS17/9 기준. 단, 직전 1년 실적 산출시 23년 IFRS17/9, 22년 IFRS17/IAS39 적용
- * 총자산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 : 22.2Q IFRS17/IAS39 기준, 23.2Q IFRS17/9 기준

1-2. 주요 경영효율 지표

(단위 : %, %p)

구 분	당기 (23.2Q)	전년 동기 (22.2Q)	증 감	
신계약률	56.83	67.98	(-)11.15	
효력상실 및 해약률	4.03	3.37	0.66	
보험금지급률	66.26	69.94	(-)3.68	
자산운용률	93.94	96.10	(-)2.16	
유지율	13회차	88.70	(-)1.67	
	25회차	77.42	0.3	
	37회차	64.36	62.92	1.44
	49회차	55.39	46.29	9.1
	61회차	41.14	41.39	(-)0.25
	73회차	37.46	39.85	(-)2.39
	85회차	36.46	47.19	(-)10.73

* 주요변동요인 : 회계기준의 변경 (항목별 적용 회계기준 하단 참조)

* 보험금지급률 : 22.2Q IFRS4/IAS39 기준, 23.2Q IFRS17/9 기준

* 자산운용률 : 22.2Q IFRS17/IAS39 기준, 23.2Q IFRS17/9 기준

주) '효력상실 및 해약률'과 '유지율'의 경우 장기보험종목에 대한 지표임

II . 재무·손익

2-1. 요약 포괄손익계산서(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당기 (23.2Q)	전년 동기 (22.2Q)	증 감
보험손익	9,113	9,338	(-)225
(보험수익)	68,642	64,478	4,164
(보험서비스비용)	58,005	54,040	3,965
(재보험수익)	2,885	2,760	125
(재보험서비스비용)	3,740	3,270	470
(기타사업비용)	669	590	79
투자손익	2,978	3,237	(-)259
(투자수익)	16,200	15,643	557
(투자비용)	13,222	12,406	816
영업이익 (또는 영업손실)	12,091	12,575	(-)484
영업외손익	58	25	33
(영업외수익)	207	180	27
(영업외비용)	149	155	(-)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12,149	12,600	(-)451
법인세비용	2,968	3,230	(-)262
당기순이익	9,181	9,370	(-)189

* 주요변동 요인 : 당기순이익은 9,181억원으로 전동기 대비 189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회계기준의 변경(22.2Q IFRS17/IAS39, 23.2Q IFRS17/9기준)의 반영, 보험손익 전기대비 255억원 감소, 투자손익 전기대비 259억원 감소, 영업외손익 전기대비 33억원 증가된 사항이 반영된 값입니다.

* 동 자료는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감사보고서 상의 공시용 재무제표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2. 요약 재무상태표(총괄)

(단위 : 억원, %)

구 분		당기 (23.2Q)		전년 동기 (22.2Q)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자 산	현 금 및 예 치 금	5,688	1.29	7,296	1.6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107,647	24.34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11,162	2.4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181,469	41.03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205,057	45.17
	만기보유금융자산	-	-	87,930	19.37
	상각후 원가측정 유가증권	-	-	-	-
	관계 · 종속기업 투자주식	8,605	1.95	8,573	1.89
	대 출 채 권	100,130	22.64	104,731	23.07
	부 동 산	11,851	2.68	11,476	2.53
	비 운 용 자 산	26,786	6.06	17,700	3.90
	기 타 자 산	-	-	-	-
	특 별 계 정 자 산	90	0.02	81	0.02
자 산 총 계		442,266	100.00	454,006	100.00
부 채	책 임 준 비 금	325,343	73.56	328,143	72.28
	계 약 자 지 분 조 정	-	-	-	-
	기 타 부 채	31,201	7.05	36,642	8.07
	특 별 계 정 부 채	92	0.02	83	0.02
부 채 총 계		356,636	80.64	364,868	80.37
자본	자 본 총 계	85,630	19.36	89,138	19.63
부 채 와 자 본 총 계		442,266	100.00	454,006	100.00

* 주요변동요인 : 자산총계 및 부채와 자본총계는 442,266억원으로 전동기 대비 11,740억원 감소 하였습니다. 이는 회계기준의 변경(22.2Q IFRS17/IAS39, 23.2Q IFRS17/9기준)의 반영, 책임준비금 전기 대비 2,800억원 감소, 기타부채 전기 대비 5,441억원 감소된 사항이 반영된 값입니다.

* 동 자료는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감사보고서 상의 공시용 재무제표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III. 자산의 건전성

3-1. 자산건전성(부실자산비율)

(단위: 억원, %, %p)

구 분	당기 (23.2Q)	전년 동기 (22.2Q)	전년대비 증감
가중부실자산(A)	586	541	45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B)	416,991	465,831	(-)48,840
비율(A/B)	0.14	0.12	0.02

* 주요변동요인 : IFRS 17 下 보험약관대출 분류대상자산 제외, AI125 분류대상자산 항목 변경

3-2. 유가증권투자 및 평가손익

(단위 : 억원)

구 분		공정가액 ¹⁾	평가손익	
일반 계정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A)	주 식	1,440	33
		출 자 금	2,310	159
		채 권	4,670	86
		수 익 증 권	88,902	649
		외화표시유가증권	9,123	(-)6
		기타유가증권	1,202	53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B)	주 식	37	(-)3
		출 자 금	0	0
		채 권	114,912	(-)15,475
		수 익 증 권	0	0
		외화표시유가증권	63,386	(-)14,231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C)	기타유가증권	3,134	(-)159
		채 권	0	0
		수 익 증 권	0	0
		외화표시유가증권	0	0
	관계, 종속기업 투자주식(D)	기타유가증권	0	0
주 식		8,605	0	
출 자 금		0	0	
소 계(A+B+C+D)		297,721	(-)28,894	
특별계정	주 식	13	1	
	채 권	6	0	
	수 익 증 권	43	0	
	외화유가증권	0	0	
	기타유가증권	0	0	
	소 계	62	1	
합 계		297,783	(-)28,893	

주1) 대여유가증권은 해당항목에 합산함

주2) 특별계정은 실적배당임

IV. 자본의 적정성

4-1. B/S상 자기자본

(단위 : 억원)

구 분	당분기 (23.2Q)	당분기-1분기 (23.1Q)	당분기-2분기 (22.4Q)
자본총계	85,630	80,468	50,502
자본금	354	354	354
자본잉여금	379	379	379
신종자본증권	-	-	-
이익잉여금	85,647	80,922	63,582
자본조정	(-)1,525	(-)1,525	(-)1,52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775	338	(-)12,288

* 주요변동요인 : 회계기준의 변경 ('22년까지 IFRS4/IAS39 기준, '23년부터 IFRS17/9 기준)

4-2. 지급여력비율

4-2-1. 지급여력비율 내용 및 산출방법 개요

[지급여력비율 총괄]

(단위: 억원, %)

구 분	당분기 (23.2Q)	당분기-1분기 (23.1Q)	당분기-2분기 (22.4Q)
지급여력비율	219.1	210.5	-
지급여력금액	190,469	178,661	-
지급여력기준금액	86,921	84,878	-

4-2-2. 지급여력비율의 경과조치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 세부]

(단위: 억원, %)

구 분	당분기 (23.2Q)	당분기-1분기 (23.1Q)	당분기-2분기 (22.4Q)
가. 지급여력금액 (기본자본 + 보완자본)	190,469	178,661	-
기본자본 ^{주2)}	91,945	84,879	-
보완자본	98,525	93,783	-
I.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상의 순자산 (1+2+3+4+5+6)	184,979	171,858	-
1. 보통주	354	354	-
2. 자본항목 중 보통주 이외의 자본증권	398	697	-
3. 이익잉여금	102,094	94,900	-
4. 자본조정	-1,526	-1,525	-
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	-749	-
6. 조정준비금	83,665	78,181	-
II. 지급여력금액으로 불인정하는 항목 (지급이 예정된 주주배당액 등)	679	714	-
III. 보완자본으로 재분류하는 항목 (기본자본 자본증권의 인정한도를 초과한 금액 등)	92,355	86,265	-
나. 지급여력기준금액 (I - II + III)	86,921	84,878	-
I. 기본요구자본	114,748	110,691	-
- 분산효과 : (1+2+3+4+5) - I	42,601	41,693	-
1. 생명장기손해보험 위험액	85,280	80,545	-
2. 일반손해보험위험액	13,001	11,642	-
3. 시장위험액	29,661	30,086	-
4. 신용위험액	23,389	24,213	-
5. 운영위험액	6,018	5,898	-
II. 법인세조정액	28,552	26,490	-
III. 기타 요구자본(1+2+3)	725	677	-
1. 업권별 자본규제를 활용한 중속회사의 요구자본 환산치	313	327	-
2. 비례성원칙을 적용한 중속회사의 요구자본 대응치	75	0	-
3. 업권별 자본규제를 활용한 관계회사의 요구자본 환산치	337	350	-
다. 지급여력비율 : 가 ÷ 나 × 100	219.1	210.5	-

* 지급여력비율은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수치만 산출 가능함 (전 생·손보사 공통사항)

[지급여력비율의 경과조치 적용에 관한 사항]

(1) 공통적용 경과조치 관련

(단위 : 백만원, %)

구분	경과조치 적용 전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 (%)	219.1	219.1
지급여력금액	19,046,950	19,046,950
기본자본	9,194,488	9,234,327
보완자본	9,852,462	9,812,622
보완자본 한도 적용 전	817,358	160,586
보완자본 한도	4,346,047	4,346,047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 중 해약환급금 상당액 초과분	9,035,104	9,035,104
(기발행 신종자본증권)	39,839	
(기발행 후순위채무)	616,932	
지급여력기준금액	8,692,095	8,692,095

(2) 선택적용 경과조치 관련

① 자본감소분 경과조치

(단위: 백만원, %)

구분	경과조치 적용 전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 (%)	219.1	-
지급여력금액	19,046,950	-
기본자본	9,194,488	-
보완자본	9,852,462	-
자본감소분 경과조치 적용금액	0	-
지급여력기준금액	8,692,095	-

* 당사는 자본감소분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아 경과조치 전·후 금액 및 비율이 동일함

② 장수위험·사업비위험·해지위험 및 대재해위험 경과조치

(단위: 백만원, %)

구분	경과조치 적용 전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 (%)	219.1	-
지급여력금액	19,046,950	-
기본자본	9,194,488	-
보완자본	9,852,462	-
지급여력기준금액	8,692,095	-
기본요구자본	11,474,826	-
생명·장기손해보험 위험액	8,527,978	-
사망위험	428,402	-
장수위험	32,728	-
장해·질병위험	4,268,750	-
장기재물·기타위험	199,301	-
해지위험	6,392,830	-
사업비위험	938,316	-
대재해위험	176,757	-
일반손해보험 위험액	1,300,126	-
보험가격 및 준비금 위험	1,177,758	-
대재해 위험	329,987	-
시장위험액	2,966,065	-
신용위험액	2,338,924	-
운영위험액	601,807	-
법인세조정액	2,855,198	-
기타요구자본	72,467	-

* 당사는 장수위험·사업비위험·해지위험 및 대재해위험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아 경과조치 전·후 금액 및 비율이 동일함

③ 주식위험 경과조치 또는 금리위험 경과조치

(단위: 백만원, %)

구분	경과조치 적용 전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 (%)	219.1	-
지급여력금액	19,046,950	-
기본자본	9,194,488	-
보완자본	9,852,462	-
지급여력기준금액	8,692,095	-
기본요구자본	11,474,826	-
생명·장기손해보험 위험액	8,527,978	-
일반손해보험 위험액	1,300,126	-
시장위험액	2,966,065	-
금리위험	750,474	-
주식위험	2,354,212	-
부동산위험	550,345	-
외환위험	1,112,334	-
자산집중위험	0	-
신용위험액	2,338,924	-
운영위험액	601,807	-
법인세조정액	2,855,198	-
기타요구자본	72,467	-

* 당사는 주식위험(또는 금리위험)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아 경과조치 전·후 금액 및 비율이 동일함

4-2-3.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요 변동 요인

(단위 : 억원, %)

구 분		당기 (23.2Q)	직전년도 결산 (22.4Q)	전전년도 결산 (21.4Q)
경과 조치 전	지급여력비율	219.1	-	-
	지급여력금액	190,469	-	-
	지급여력기준금액	86,921	-	-
경과 조치 후	지급여력비율	219.1	-	-
	지급여력금액	190,469	-	-
	지급여력기준금액	86,921	-	-

* 지급여력비율은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수치만 산출 가능함 (전 생·손보사 공통사항)

* 당사는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아 경과조치 전·후 금액 및 비율이 동일함

V. 수익성

(단위 : 억원, %, %p)

구분	당기 (23.2Q)	전년 동기 (22.2Q)	증감
투자이익(A)	15,603	13,781	1,822
경과운용자산(B)	435,547	403,102	32,445
(1) 운용자산이익률(A/B)	3.58	3.42	0.16
(2) 영업이익률	11.67	5.27	6.40
(3) 총자산수익률(ROA)	4.12	4.10	0.02
(4) 자기자본수익률(ROE)	20.26	23.15	(-)2.89

* 주요변동요인 : 회계기준의 변경 (항목별 적용 회계기준 하단 참조)

* 운용자산이익률, 영업이익률 :

22.2Q IFRS4/IAS39 기준

23.2Q IFRS17/9 기준. 단, 직전 1년 실적 산출시 23년 IFRS17/9, 22년 IFRS17/IAS39 적용

* 총자산수익률(ROA), 자기자본수익률(ROE) : 22.2Q IFRS17/IAS39 기준, 23.2Q IFRS17/9 기준

VI. 위험관리

6-1. 비례성원칙 적용에 관한 사항

1) 개념

비례성원칙이란, 노출된 리스크의 본질, 규모 및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요구자본의 측정방법을 단순화한 방법(이하 '간편법')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정한 원칙입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 "IV.1-6. 비례성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에 근거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적용현황

당사는 7개의 종속회사에 대하여 간편법으로 요구자본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간편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중요성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기준 충족 시 해당 종속회사의 일반회계 재무상태표 상 총자산의 8%로 요구자본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간편법을 적용하는 종속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 '23.6월말, 단위: 억원)

구분	종속회사명	최초 적용년월	비중요성 기준		요구자본 (총자산의 8%)
			규모 ^{주1)}	리스크 ^{주2)}	
1	DB자동차보험손해사정(주)	'23.6월	충족	충족	17
2	DB CAS손해사정(주)				16
3	DB CSI손해사정(주)				10
4	DB CNS자동차손해사정(주)				9
5	DB MnS(주)				16
6	DB ADVISORY AMERICA, LTD.				1
7	John Mullen & Company, Inc.				6

주1) 규모기준 : 해당 종속회사의 총자산이 그룹기준 총자산의 1% 미만 여부

주2) 리스크기준 : 해당 종속회사의 파생상품거래 규모가 해당 종속회사 총자산의 6% 미만 여부

간편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비례성원칙 충족 여부를 입증한 후,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였습니다. 간편법은 최대 3년 동안 사용 가능하고, 3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비례성원칙 충족여부를 다시 입증할 계획입니다. 간편법 적용현황, 적용결과 및 모니터링 내역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리스크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간편법 적용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2.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 관리

1) 개념 및 위험액 현황

① 개념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이란 보험계약의 인수, 보험금 지급 등 보험계약 자체의 요인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정의하며, 계리적 가정 변동시 보험회사에 직·간접적으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합니다.

②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현황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대재해위험 이외]

(단위: 백만원, %)

구분			I. 생명보험	II. 장기손해보험	III. 총계
당기 (2023.2Q)	충격전 평가금액	측정대상자산	943,673	3,016,631	3,960,304
		측정대상부채	5,831,617	9,715,285	15,546,902
	충격후 평가금액	사망위험	100,175	328,228	428,402
		장수위험	32,668	60	32,728
		장해·질병위험	450,025	3,818,725	4,268,750
		장기재물·기타위험	0	199,301	199,301
		해지위험	1,227,352	5,165,478	6,392,830
		사업비위험	156,420	781,896	938,316
직전 반기 (2022.4Q)	충격전 평가금액	측정대상자산	-	-	-
		측정대상부채	-	-	-
	충격후 평가금액	사망위험	-	-	-
		장수위험	-	-	-
		장해·질병위험	-	-	-
		장기재물·기타위험	-	-	-
		해지위험	-	-	-
		사업비위험	-	-	-

* 지급여력비율은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수치만 산출 가능함 (전 손·생보사 공통사항)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대재해위험]

(단위: 백만원)

구 분	당기 (2023.2Q)		직전 반기 (2022.4Q)	
	익스포저	대재해위험액	익스포저	대재해위험액
I. 전염병위험액	107,584,892	107,585	-	-
1. 생명보험	43,641,661	43,642	-	-
2. 장기손해보험	63,943,231	63,943	-	-
II. 대형사고위험액	2,501,679,499	140,244	-	-
1. 생명보험	79,770,612	2,432	-	-
2. 장기손해보험	2,421,908,887	137,812	-	-
III. 총계	2,609,264,391	176,757	-	-

*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수치만 산출 가능함 (전 손·생보사 공통사항)

2) 측정(인식) 및 관리방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하위위험별로 충격시나리오 방식 또는 위험계수 방식을 적용하여 측정합니다. 계리적 가정의 변동성으로 인한 사망위험액, 장수위험액, 장애·질병위험액, 장기재물·기타위험액, 해지위험액, 사업비위험액은 충격시나리오 방식, 극단적이거나 불규칙한 사고로 인한 대재해위험액은 위험계수 방식으로 측정하고 하위위험 간 상관계수를 반영하여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을 산출합니다.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연간 보험위험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준수 현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합니다. 또한 손해율, 재보험 보유비율 등 주요 요인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3) 재보험정책

① 개요

매년 종목별(일반/자동차/장기) 재보험 위험관리전략을 수립한 후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보험 위험관리전략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존 재보험 출재현황 및 분석
- 향후 출재 전략 방향
- 위험보유한도
- 단일 재보험사 최대출재비율
- 부적격 재보험자에 대한 거래제한

또한,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재보험 위험관리전략을 준수하고 동 전략을 실행하기 위하여 재보험거래 및 재보험관리에 대한 출수재 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가 보유할 보험금액 또는 보상한도액의 기준과 최고 한도액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약보험 및 임의보험 모두 '재보험자 선택 및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재보험자에 대한 안전도 및 집중도 평가를 실시하여 거래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안전도 평가'는 공개정보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한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 충족 여부
-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등급(S&P BBB+ 이상 또는 A.M. Best A- 이상)
- 보험개발원 재보험사 Listing에 등재 여부

'집중도 평가'는 재보험사의 부도에 의해 당사에 미칠 수 있는 금전적 피해를 재보험사별, 국가별로 산출하여 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② 상위5대 재보험자 편중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상위 5대 재보험자			
	AA- 이상	A+ ~ A-	BBB+이하	기타
출재보험료	177,649	0	0	0
비 중	98.0%	0.0%	0.0%	0.0%

주1) 외국신용기관의 신용등급은 세척 별표22 기준에 따라 국내신용기관의 신용등급으로 전환한다.

주2) 출재보험료의 비중은 전체 재보험료대비 비중을 기재

③ 재보험사 군별 출재보험료

(단위 : 백만원)

구 분	AA- 이상	A+ ~ A-	BBB+이하	기타	합계
출재보험료	181,233	0	0	0	181,233
비 중	100.0%	0.0%	0.0%	0.0%	100%

주1) 기타는 무등급, 부적격 재보험사를 포함하며 재보험사, 보험종목, 출재 경위 및 출재보험료 규모 등을 별도로 요약하여 기술한다.

6-3. 일반손해보험위험 관리

1) 개념 및 위험액 현황

① 개념

일반손해보험에서 보험 위험이란 보험의 여러 리스크 요인에 의해 보험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위험의 가능성을 말합니다. 일반손해보험의 보험위험은 보험가격 위험, 준비금위험과 대재해위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험가격위험은 미래 보험사고 발생의 시기, 빈도, 심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합니다.

준비금위험은 기발생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한 지급준비금이 장래 지급될 보험금을 충당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합니다.

대재해위험은 보험가격위험 및 준비금위험에서 고려하지 못한 극단적, 예외적 위험(자연재해, 대형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합니다.

② 보험위험액 현황

[보험가격위험(보증보험 제외)]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기 (2023.2Q)		직전 반기 (2022.4Q)	
	익스포저	보험가격 위험액	익스포저	보험가격 위험액
I. 국내	4,955,658	914,743	-	-
1. 화재	27,595	22,922	-	-
2. 기술	26,820	18,279	-	-
3. 종합	154,648	137,932	-	-
4. 해상	39,795	36,690	-	-
5. 근재	11,774	6,345	-	-
6. 책임	131,821	44,083	-	-
7. 상해	183,415	49,279	-	-
8. 외국인상해	69,080	193	-	-
9. 농작물	17,300	8,687	-	-
10. 기타(일반)	131,383	82,257	-	-
11. 개인용자동차(인담보)	1,278,070	161,932	-	-
12. 개인용자동차(물담보)	1,514,540	294,761	-	-
13. 업무용자동차(인담보)	319,559	58,453	-	-
14. 업무용자동차(물담보)	421,474	82,062	-	-
15. 영업용자동차(인담보)	139,434	73,020	-	-
16. 영업용자동차(물담보)	152,371	64,974	-	-
17. 기타(자동차)	336,578	62,241	-	-
II. 유럽	15,894	10,981	-	-
III. 미국·캐나다	359,273	215,994	-	-
IV. 중국	40,965	27,506	-	-
V. 일본	3,988	2,755	-	-
VI. 기타 선진국	4,038	2,527	-	-
VII. 신흥국	18,324	11,170	-	-
VIII. 해외 기타	44,732	28,410	-	-

*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수치만 산출 가능함 (전 손·생보사 공통사항)

[보증보험 보험가격위험]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기 (2023.2Q)			직전 반기 (2022.4Q)		
	익스포저		보험가격 위험액	익스포저		보험가격 위험액
	보험료	가입금액		보험료	가입금액	
I. 국내	63	2,727	39	-	-	-
1. 신원보증	0	0	0	-	-	-
2. 법률보증	0	0	0	-	-	-
3. 이행보증	0	0	0	-	-	-
4. 금융보증	0	0	0	-	-	-
5. 소비자신용	0	0	0	-	-	-
6. 상업신용	63	2,727	39	-	-	-
II. 유럽	0	0	0	-	-	-
III. 미국·캐나다	596	53,294	365	-	-	-
IV. 중국	0	0	0	-	-	-
V. 일본	0	0	0	-	-	-
VI. 기타 선진국	0	0	0	-	-	-
VII. 신흥국	0	0	0	-	-	-
VIII. 해외 기타	0	0	0	-	-	-

*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수치만 산출 가능함 (전 손·생보사 공통사항)

[준비금위험]

(단위: 백만원)

구 분	당기 (2023.2Q)		직전 반기 (2022.4Q)	
	익스포저	준비금 위험액	익스포저	준비금 위험액
I. 국내	1,393,796	312,852	-	-
1. 화재	12,617	8,037	-	-
2. 기술	21,860	8,635	-	-
3. 종합	121,194	47,023	-	-
4. 해상	31,312	21,042	-	-
5. 근재	18,982	11,370	-	-
6. 책임	75,781	40,240	-	-
7. 상해	59,937	13,666	-	-
8. 외국인상해	109,923	550	-	-
9. 농작물	1,113	875	-	-
10. 기타(일반)	42,176	33,151	-	-
11. 개인용자동차(인담보)	480,506	107,153	-	-
12. 개인용자동차(물담보)	124,392	38,935	-	-
13. 업무용자동차(인담보)	139,392	38,751	-	-
14. 업무용자동차(물담보)	36,458	11,266	-	-
15. 영업용자동차(인담보)	74,376	32,651	-	-
16. 영업용자동차(물담보)	17,335	7,593	-	-
17. 기타(자동차)	26,437	3,622	-	-
18. 신원보증	0	0	-	-
19. 법률보증	0	0	-	-
20. 이행보증	0	0	-	-
21. 금융보증	0	0	-	-
22. 소비자신용	0	0	-	-
23. 상업신용	5.22	0.10	-	-
II. 유럽	36,315	14,090	-	-
III. 미국·캐나다	262,204	95,747	-	-
IV. 중국	26,797	10,247	-	-
V. 일본	3,088	1,198	-	-
VI. 기타 선진국	2,554	970	-	-
VII. 신흥국	11,825	4,468	-	-
VIII. 해외 기타	40,533	15,731	-	-

*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수치만 산출 가능함 (전 손·생보사 공통사항)

[대재해위험]

(단위: 백만원)

구 분	당기 (2023.2Q)		직전 반기 (2022.4Q)	
	익스포저	대재해위험액	익스포저	대재해위험액
가. 자연재해위험액	866,375,192	157,539	-	-
Ⅰ. 지진위험	338,507,231	125,865	-	-
Ⅱ. 풍수해위험	527,867,961	155,946	-	-
Ⅲ. 총계	866,375,192	157,539	-	-
나. 대형사고위험액	6,600,366,264	289,953	-	-
Ⅰ. 대형사고재물위험	981,604,506	56,207	-	-
Ⅱ. 대형사고상해위험	5,618,761,758	233,746	-	-
다. 대형보증위험액	55,994	92	-	-
라. 대재해위험액	7,466,797,450	329,987	-	-

*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수치만 산출 가능함 (전 손·생보사 공통사항)

2) 측정(인식) 및 관리방법

일반손해보험 위험은 일반손해보험 계약 전체를 대상으로 측정하며, 보험가격위험 및 준비금위험에 대한 요구자본과 대재해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으로 구분하여 하위위험별로 위험계수 방식을 적용하여 측정합니다.

보험가격과 준비금위험은 하위위험, 보장단위, 보장그룹, 지역의 순서로 합산하여 산출하며, 각 위험 단위별 상관계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재해위험은 지진,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과 재물, 상해 관련 대형사고에 대한 위험, 대형보증에 대한 위험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일반손해보험에 대한 위험을 보험계약에 대한 인수 지침, 위험보유 한도 관리 및 재보험에 대한 전략 등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 가격설정(pricing)의 적정성

매년 보험종목별 손해율 및 합산비율 관리를 통하여 위험관리 및 Pricing에 활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자동차 손해율 및 합산비율 현황]

구 분		FY'20	FY'21	FY'22	FY'22	
					1분기	2분기
일 반	손해율	68.37%	72.97%	73.24%	74.52%	72.01%
	사업비율	26.54%	28.67%	28.94%	26.33%	31.45%
	합산비율	94.91%	101.64%	102.18%	100.85%	103.47%
자동차	손해율	79.51%	79.36%	75.84%	77.21%	74.51%
	사업비율	15.03%	15.00%	15.74%	16.29%	15.20%
	합산비율	94.53%	94.35%	91.58%	93.50%	89.70%

- 손해율은 발생손해액(보험금지금액)이 경과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고, 사업비율은 보험계약 모집에 지출된 사업비가 경과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손해율과 사업비율의 합을 합산비율이라 하며, 합산비율이 100% 이상인 경우 보험금지금액과 사업비지출액이 보험료수입을 초과하고 있어 보험영업에서 손실이 발생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4) 지급준비금 적립의 적정성

① 지급준비금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보유지급준비금
일반	753,471
자동차	953,958
합계	1,707,430

주1) IFRS17기준 일반손해보험 준비금 부채에서 보험미수금 및 보험미지급금을 제외

② 보험금진전추이

[일반보험]

- 보험금 진전추이

(단위 : 백만원)

진전년도 사고년도	1	2	3	4	5
당기(당반기)-4년	304,144	471,104	507,404	528,894	547,685
당기(당반기)-3년	312,400	459,521	504,055	525,951	-
당기(당반기)-2년	320,937	496,795	540,871	-	-
당기(당반기)-1년	289,226	486,456	-	-	-
당기(당반기)	376,773	-	-	-	-

[자동차보험]

- 보험금 진전추이

(단위 : 백만원)

진전년도 사고년도	1	2	3	4	5
당기(당반기)-4년	2,068,675	2,399,205	2,451,840	2,483,122	2,497,814
당기(당반기)-3년	2,212,216	2,545,876	2,590,704	2,614,300	-
당기(당반기)-2년	2,282,073	2,643,670	2,687,667	-	-
당기(당반기)-1년	2,339,482	2,710,321	-	-	-
당기(당반기)	2,598,043	-	-	-	-

5) 보험위험의 집중 및 재보험 정책

① 개요

매년 종목별(일반/자동차/장기) 재보험 위험관리전략을 수립한 후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보험 위험관리전략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존 재보험 출재현황 및 분석
- 향후 출재 전략 방향
- 위험보유한도
- 단일 재보험사 최대출재비율
- 부적격 재보험자에 대한 거래제한

또한,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재보험 위험관리전략을 준수하고 동 전략을 실행하기 위하여 재보험거래 및 재보험관리에 대한 출수재 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가 보유할 보험 금액 또는 보상한도액의 기준과 최고 한도액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약보험 및 임의보험 모두 '재보험자 선택 및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재보험자에 대한 안전도 및 집중도 평가를 실시하여 거래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안전도 평가'는 공개정보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한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 충족 여부
-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등급(S&P BBB+ 이상 또는 A.M. Best A- 이상)
- 보험개발원 재보험사 Listing에 등재 여부

'집중도 평가'는 재보험사의 부도에 의해 당사에 미칠 수 있는 금전적 피해를 재보험사별, 국가별로 산출하여 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② 상위 5대 재보험자 편중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상위 5대 재보험자			
	AA- 이상	A+ ~ A-	BBB+이하	기타
출재보험료	244,404	0	0	0
비중	58.2%	0.0%	0.0%	0.0%

주1) 외국신용기관의 신용등급은 세척 별표22 기준에 따라 국내신용기관의 신용등급으로 전환한다.

주2) 출재보험료의 비중은 전체 재보험료대비 비중을 기재한다.

③ 재보험사 군별 출재보험료

(단위: 백만원, %)

구분	AA- 이상	A+ ~ A-	BBB+이하	기타	합계
출재보험료	409,904	2,148	0	7,534	419,587
비중	97.7%	0.5%	0.0%	1.8%	100.0%

* 기타 재보험자(무위험/무등급): 국가재보험(한국환경산업기술원) 36.3억원, 해외재보험자 (FRONTING ROYAL & SUN ALLIANCE INSUREANCE PLC 등) 39억원 입니다.

6-4. 시장위험 관리

1) 개념 및 익스포져

① 개념

시장위험이란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금리, 주가, 부동산, 환율 등의 시장가격 변동으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보험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위험액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금리위험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기 (2023.2Q)					
	총격 전	총격 후				
		평균회귀	금리상승	금리하락	금리평탄	금리경사
I. 자산총계	48,080,529	48,217,109	45,004,930	51,674,425	48,724,171	47,473,059
1. 직접보유	40,054,179	40,175,310	37,162,420	43,444,670	40,726,721	39,420,689
가. 현금 및 예치금	157,157	157,969	139,470	177,132	162,145	152,200
나. 주식	0	0	0	0	0	0
다. 채권	22,777,687	22,844,150	20,640,873	25,307,055	23,297,274	22,304,355
라. 대출채권	15,942,683	15,999,656	15,243,490	16,742,802	16,077,758	15,800,498
마. 부동산	0	0	0	0	0	0
바. 비운용자산	1,176,653	1,173,534	1,138,587	1,217,682	1,189,544	1,163,636
2. 간접투자	8,026,350	8,041,799	7,842,511	8,229,755	7,997,451	8,052,370
가. 현금 및 예치금	14,188	14,213	14,154	14,222	14,172	14,204
나. 주식	0	0	0	0	0	0
다. 채권	120,676	121,067	113,077	129,299	121,073	120,370
라. 대출채권	5,018,424	5,032,190	4,846,835	5,208,494	4,987,419	5,046,494
마. 부동산	0	0	0	0	0	0
바. 비운용자산	2,873,063	2,874,329	2,868,444	2,877,740	2,874,788	2,871,302
II. 부채총계	29,069,526	29,156,435	26,100,448	32,805,660	30,500,569	27,640,511
1. 직접보유	29,039,038	29,125,586	26,068,905	32,776,239	30,471,167	27,608,926
가. 현행추정부채	28,533,610	28,617,738	25,446,502	32,408,272	30,023,893	27,046,325
나. 기타부채	505,428	507,847	622,403	367,967	447,273	562,601
2. 간접투자	30,488	30,850	31,543	29,421	29,403	31,584
III. 순자산가치	19,011,003	19,060,673	18,904,483	18,868,765	18,223,602	19,832,549
IV. 금리 위험액				750,474		

(단위 : 백만원)

구 분	직전 반기 (2022.4Q)				
	총격 전	총격 후			
		평균회귀	금리상승	금리하락	금리평탄
I. 자산총계					
1. 직접보유					
가. 현금 및 예치금					
나. 주식					
다. 채권					
라. 대출채권					
마. 부동산					
바. 비운용자산					
2. 간접투자					
가. 현금 및 예치금					
나. 주식					
다. 채권					
라. 대출채권					
마. 부동산					
바. 비운용자산					
II. 부채총계					
1. 직접보유					
가. 현행 추정부채					
나. 기타부채					
2. 간접투자					
III. 순자산가치					
IV. 금리 위험액					

*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수치만 산출 가능함 (전 손·생보사 공통사항)

③ 주식위험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격 전 공정가치		주식위험액	
	자산	부채		
당기 (23.2Q)	I. 기본법		2,354,212	
	(1) 선진시장 상장주식	572,869	503,555	101,129
	(2) 신흥시장 상장주식	81,072	8,986	36,482
	(3) 우선주	2,248,237	2,751	217,179
	(4) 인프라 주식	215,505	0	43,101
	(5) 장기보유주식	0	0	0
	(6) 기타주식	3,083,968	44,015	2,046,253
	II. 간편법			
III. 합 계^{주1)}				
직전 반기 (22.4Q)	I. 기본법		-	
	(1) 선진시장 상장주식	-	-	-
	(2) 신흥시장 상장주식	-	-	-
	(3) 우선주	-	-	-
	(4) 인프라 주식	-	-	-
	(5) 장기보유주식	-	-	-
	(6) 기타주식	-	-	-
	II. 간편법			-
III. 합 계^{주1)}			-	

*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수치만 산출 가능함 (전 손·생보사 공통사항)

주1) 주식위험액은 주식위험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자산과 부채를 대상으로 측정하며,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자산(퇴직보험·연금, 변액) 및 부채(변액)를 나눠서 공정가치를 기재

④ 부동산위험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격 전	부동산 위험액
당기 (23.2Q)	I. 기본법	550,345
	1. 직접소유	546,429
	2. 간접소유	3,915
	3. 의무보유부동산	0
	II. 간편법	0
	III. 합 계	550,345
직전 반기 (22.4Q)	I. 기본법	-
	1. 직접소유	-
	2. 간접소유	-
	3. 의무보유부동산	-
	II. 간편법	-
	III. 합 계	-

*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수치만 산출 가능함 (전 손·생보사 공통사항)

⑤ 외환위험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익스포저	환율 상승	환율 하락	가격변동 위험	외환위험액
당기 (23.2Q)	USD	335,096	0	934,470	64,647	
	EUR	429,322	0	20,638	17,538	
	CNY	140,739	0	35,185	0	
	JPY	941	0	2,554	0	
	기타	612,899	1,440	71,084	28,129	
계		1,518,997	1,439	1,002,020	110,314	1,112,334
직전 반기 (22.4Q)	USD		-	-	-	
	EUR		-	-	-	
	CNY		-	-	-	
	JPY		-	-	-	
	기타		-	-	-	
계			-	-	-	-

⑥ 자산집중위험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한도 초과 익스포저	위험액
당기 (23.2Q)	1. 거래상대방 관련 익스포저	0	0
	2. 부동산	0	0
	가. 개별부동산	0	0
	나. 부동산 보유 전체	0	0
	계	0	0
직전 반기 (22.4Q)	1. 거래상대방 관련 익스포저	-	-
	2. 부동산	-	-
	가. 개별부동산	-	-
	나. 부동산 보유 전체	-	-
	계	-	-

*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수치만 산출 가능함 (전 손·생보사 공통사항)

주) 자산집중위험은 해당하는 경우 작성

2) 측정(인식) 및 관리방법

① 측정방법

- 시장위험액은 금리위험, 주식위험, 부동산 위험, 외환위험, 자산집중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을 구분하여 측정하되, 시장위험액 하위위험 간 상관계수를 반영하여 합산합니다. 이때, 하위위험별 중 금리위험액, 주식위험액, 부동산위험액, 외환위험액은 충격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하며 자산 집중위험액은 위험계수 방식으로 측정합니다.

② 관리방법

- 시장위험의 편중 및 대규모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K-ICS 제도기준 및 Market VaR를 활용하여 위험속성별 익스포저 한도, Loss Cut 기준, 분산도 관리 기준, 운용손실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극단적 시장상황에 대비하여 다양한 Stress Test 및 시나리오 분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6-5. 신용위험 관리

1) 개념 및 위험액

① 개념

신용위험이란 자산 운용에 있어 파산, 채무재조정 등 거래 상대방의 신용악화에 따라 보유자산의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 받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② 신용위험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당기 (2023.2Q)		직전 반기 (2022.4Q)	
	익스포저	위험액	익스포저	위험액
I. 신용자산	44,785,217	2,125,240	-	-
(1)무위험	8,501,834	0	-	-
(2)공공부문	3,036,871	47,570	-	-
(3)일반기업	25,993,663	1,565,875	-	-
(4)유동화	1,892,992	269,862	-	-
(5)재유동화	0	0	-	-
(6)기타	2,875,149	180,231	-	-
(7)재보험관련	2,484,707	61,701	-	-
II. 담보부자산	3,482,456	213,685	-	-
(1)상업용부동산담보대출	2,987,735	200,098	-	-
(2)주택담보대출	454,294	11,055	-	-
(3)적격금융자산담보대출	40,427	2,533	-	-

*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수치만 산출 가능함 (전 손·생보사 공통사항)

2) 측정(인식) 및 관리방법

① 측정방법

- 신용위험액의 측정대상은 신용리스크가 내재된 모든 자산을 대상으로 하며, 간접 투자 및 난외자산(장외파생거래, 약정, 보증 등)을 포함하여 리스크를 측정합니다.

대상자산은 신용자산과 담보부자산으로 구분하여 측정하며 신용자산은 다시 무위험 익스포져, 공공부문 익스포져, 일반기업 익스포져, 유동화익스포져, 재유동화 익스포져, 기타자산 익스포져로 구분합니다. 또한 담보부 자산은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익스포져, 주택담보 대출 익스포져, 적극금융자산담보대출 익스포져로 구분합니다.

신용위험액은 거래자산별 익스포져에 해당하는 위험계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신용자산 및 적극금융담보대출의 위험계수는 거래자산의 K-ICS 신용등급과 유효만기에 기초하여 적용되며, 위 적극금융담보대출을 제외한 담보부 자산은 LTV(Loan to Value) 및 DSCR(Debt Service Coverage Ratio)에 기초한 위험계수를 적용합니다.

② 관리방법

- 신용위험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K-ICS제도 및 내부기준을 활용하여 위험속성별 익스포져 한도, 신용등급별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산업별 포트폴리오 목표, 포트폴리오 신용건전도 목표, 계열별(그룹별) 신용공여 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사업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투자심사 1, 2 파트를 설치하여 신규투융자 시 심사업무 및 정기적인 론 리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투자유니버스를 설정하여 투융자 가능한 기업들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시장상황에 대비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Stress Test 분석 및 민감도 분석 또한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신용등급별 익스포져 현황

① 채권

(단위: 백만원)

구 분		지급여력제도 기준 신용등급									합 계
		1	2	3	4	5	6	7	무등급	디폴트	
당 기 (23. 2Q)	I. 무위험										7,502,609
	II. 공공부문	0	2,013,272	6,097	0	0	0	0	10,569	0	2,029,938
	III. 일반기업	992,291	3,773,243	4,712,268	710,528	72,407	1,912	0	27,232	0	10,289,880
	IV. 유동화	82,248	27,204	45,800	66,495	0	0	0	0	0	221,747
	V. 재유동화	0	0	0	0	0	0	0	0	0	0
	VI 기타	0	0	0	0	0	0	0	0	0	0
합 계		1,074,540	5,813,719	4,764,165	777,022	72,407	1,912	0	37,801	0	20,044,175
직 전 반 기 (22. 4Q)	I. 무위험										-
	II. 공공부문	-	-	-	-	-	-	-	-	-	-
	III. 일반기업	-	-	-	-	-	-	-	-	-	-
	IV. 유동화	-	-	-	-	-	-	-	-	-	-
	V. 재유동화	-	-	-	-	-	-	-	-	-	-
	VI 기타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수치만 산출 가능함 (전 손.생보사 공통사항)

주) 지급여력제도 신용등급은 <신용평가기관 K-ICS신용등급 매핑표>를 참고

② 대출채권

(단위: 백만원)

구 분		지급여력제도 기준 신용등급									합 계
		1	2	3	4	5	6	7	무등급	디폴트	
당기 (23.2Q)	I. 무위험										622,091
	II. 공공부문	0	124,376	0	0	0	0	0	598,920	0	723,296
	III. 일반기업	0	602,296	695,340	244,347	0	0	0	6,215,811	0	7,757,794
	IV. 유동화	0	0	39,959	0	0	0	0	0	0	39,959
	V. 재유동화	0	0	0	0	0	0	0	0	0	0
	VI. 기타	0	0	0	2,098	0	0	0	1,497,405	0	1,499,503
	합 계	0	726,672	735,298	246,445	0	0	0	8,312,136	0	10,642,643
직전 반기 (22.4Q)	I. 무위험										-
	II. 공공부문	-	-	-	-	-	-	-	-	-	-
	III. 일반기업	-	-	-	-	-	-	-	-	-	-
	IV. 유동화	-	-	-	-	-	-	-	-	-	-
	V. 재유동화	-	-	-	-	-	-	-	-	-	-
	VI. 기타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수치만 산출 가능함 (전 손·생보사 공통사항)
 주) 지급여력제도 신용등급은 <신용평가기관 K-ICS신용등급 매핑표>를 참고

③ 난외자산(파생, 신용공여)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급여력제도 기준 신용등급									합 계
		1	2	3	4	5	6	7	무등급	디폴트	
당기 (23.2Q)	I. 무위험										54,621
	II. 공공부문	0	51,936	0	0	0	0	0	199,522	0	251,458
	III. 일반기업	0	12,797	186,602	62,257	23,000	0	0	1,210,806	0	1,495,462
	IV. 유동화	0	0	78,577	94,925	12,678	0	0	1,431	0	187,611
	V. 재유동화	0	0	0	0	0	0	0	0	0	0
	VI. 기타	0	0	0	0	0	0	0	84,148	0	84,148
	합 계	0	64,733	265,178	157,183	35,678	0	0	1,495,907	0	2,073,300
직전 반기 (22.4Q)	I. 무위험										-
	II. 공공부문	-	-	-	-	-	-	-	-	-	-
	III. 일반기업	-	-	-	-	-	-	-	-	-	-
	IV. 유동화	-	-	-	-	-	-	-	-	-	-
	V. 재유동화	-	-	-	-	-	-	-	-	-	-
	VI. 기타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수치만 산출 가능함 (전 손·생보사 공통사항)
 주) 지급여력제도 신용등급은 <신용평가기관 K-ICS신용등급 매핑표>를 참고한다.

④ 재보험자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급여력제도 기준 신용등급									
		1	2	3	4	5	6	7	무등급	디폴트	합 계
당기 (23.2Q)	I.생명·장기손해보험	0	138,734	177,899	0	0	0	0	0	0	316,634
	1.출재보험료부채	0	82,942	0	0	0	0	0	0	0	82,942
	2.출재준비금부채	0	55,793	177,899	0	0	0	0	0	0	233,692
	II.일반손해보험	0	102,879	818,423	95,885	0	0	0	0	0	1,017,188
	1.출재보험료부채	0	11,270	60,079	453	0	0	0	0	0	71,802
	2.출재준비금부채	0	91,609	758,344	95,433	0	0	0	0	0	945,386
직전 반기 (22.4Q)	I.생명·장기손해보험	-	-	-	-	-	-	-	-	-	-
	1.출재보험료부채	-	-	-	-	-	-	-	-	-	-
	2.출재준비금부채	-	-	-	-	-	-	-	-	-	-
	II.일반손해보험	-	-	-	-	-	-	-	-	-	-
	1.출재보험료부채	-	-	-	-	-	-	-	-	-	-
	2.출재준비금부채	-	-	-	-	-	-	-	-	-	-

*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수치만 산출 가능함 (전 손·생보사 공통사항)
 주) 지급여력제도 신용등급은 <신용평가기관 K-ICS신용등급 매핑표>를 참고

< 신용평가기관 K-ICS 신용등급 매핑표 >

K-ICS 신용등급	국내 신용평가기관	해외 신용평가기관			
		S&P	Moody's	Fitch	AM Best
1		AAA	Aaa	AAA	
2	AAA	AA/A-1	Aa/P-1	AA/F1	A+
3	AA/A1	A/A-2	A/P-2	A/F2	A
4	A/A2	BBB/A-3	Baa/P-3	BBB/F3	B+
5	BBB/A3	BB	Ba	BB	B
6	BB	B	B	B	C+
7	B 이하	CCC ↓	Caa ↓	CCC ↓	C ↓

6-6. 유동성위험 관리

1) 개념 및 유동성갭 현황

① 개념

유동성위험이란 자금의 조달, 운용 기간의 불일치 또는 예기치 않은 자금의 유출 등으로 일시적 자금부족 사태가 발생하거나, 자금부족 해소를 위한 고금리 자금의 조달, 보유 유가증권의 불리한 매각 등으로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② 유동성갭 현황 (만기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3개월이하	3개월초과 ~ 6개월 이하	6개월초과 ~1년 이하	합 계
자 산 (A)	현금과 예치금	6,065	400	1,300	7,765
	유가증권	597,636	0	216,965	814,601
	대출채권	182,023	158,794	438,696	779,513
	기 타	6,469	27,890	39,760	74,120
자산 계		792,193	187,084	696,721	1,675,999
부 채 (B)	해약환급금	155,879	154,867	336,548	647,294
	차입부채	0	0	0	0
	부채 계	155,879	154,867	336,548	647,294
유동성갭 (A-B)		636,314	32,217	360,173	1,028,704

2) 인식 및 관리방법

잔존만기 3개월/6개월/1년 이내의 유동성 자산 대비 추정 부채 유출액을 통해 유동성위험을 측정 중이며, 유동성갭과 유동성비율 분석을 통해 급격한 단기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유동성 자산 보유하도록 관리 중입니다. 또한 단기자금조달 약정을 아래와 같이 맺어 단기 지급불능 사태에 대비 중입니다.

<단기자금조달처 약정 현황>

구 분	신한은행		하나은행	시티은행
차월구분	일중차월	당좌차월	일중차월	일중차월
약정금액	200억원	20억원	100억원	200억원

※별도 재무제표 기준

VII. 기타 일반 현황

7-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내용

- 해당사항 없음

7-2. 재보험 현황

1) 국내 재보험거래현황

(단위: 억원)

구 분		당기 (23.2Q)	직전 반기 (22.4Q)	반기대비 증감액	
국	수재	수재보험료	150	145	5
		수재보험금	122	61	61
		수재보험수수료	14	13	1
		수재차액(A)	14	71	(-)57
내	출재	출재보험료	3,916	3,939	(-)23
		출재보험금	2,804	4,163	(-)1,359
		출재보험수수료	309	308	1
		출재차액(B)	(-)803	532	(-)1,335
순수지 차액 (A+B)		(-)789	603	(-)1,392	

* 주요변동요인 : 국내 순수지차액은 (-)789억원으로 전동기말 대비 1,392억원 감소하였습니다. 국내의 수재차액은 전반기말 대비 57억 감소하였고 출재차액은 전반기말 대비 1,335억 감소하였습니다.

2) 국외 재보험거래현황

(단위: 억원)

구 분		당기 (23.2Q)	직전 반기 (22.4Q)	반기대비 증감액	
국	수재	수재보험료	503	519	(-)16
		수재보험금	257	324	(-)67
		수재보험수수료	120	133	(-)13
		수재차액(A)	126	62	64
외	출재	출재보험료	2,091	1,804	287
		출재보험금	507	1,019	(-)512
		출재보험수수료	264	235	29
		출재차액(B)	(-)1,320	(-)550	(-)770
순수지 차액 (A+B)		(-)1,194	(-)488	(-)706	

* 주요변동요인 : 국외 순수지차액은 (-)1,194억원으로 전동기말 대비 706억원 감소하였습니다. 국외 수재차액은 전반기말 대비 64억원 증가하였고 출재차액은 전반기말 대비 77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7-3. 해약환급금준비금 등의 적립

(단위 : 억원)

구 분	당분기 (23.2Q)	직전분기 (23.1Q)
이익잉여금	85,647	80,922
대손준비금	262	108
비상위험준비금	14,489	14,120
해약환급금준비금	27,146	24,112
보증준비금	-	-

* 주요변동요인 : 회계기준의 변경 ('22년까지 IFRS4/IAS39 기준, '23년부터 IFRS17/9 기준)

* 이익잉여금은 85,647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4,72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대손준비금은 전분기말 대비 154억원, 비상위험준비금은 전분기말 대비 369억원, 그리고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전분기말 대비 3,034억원 증가된 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7-4.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1) 2022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항목별 평가결과 (2022년)
계량 지표	1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해당없음
	2	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해당없음
비계량 지표	3	금융소비자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해당없음
	4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해당없음
	5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해당없음
	6	금융상품 판매후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해당없음
	7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해당없음
	8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해당없음

주1) [평가근거] (2021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 (2016년~2020년)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주2) [평가 대상회사]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손해보험업권 전체의 1% 이상인 손해보험사, 영업규모가 작거나 민원건수가 적은 회사는 해당년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대상회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매년 1개 그룹씩 나눠서 평가 (3년 주기 평가)

- 단, 전년도 실태평가 결과, 감독·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주기를 달리 운영할 수 있음

주3) [평가 대상기간] 계량평가 : 2020년~2021년 중 소비자보호활동

비계량평가 : 2020~2022년 6월 중 소비자보호활동

주4) [평가항목] 2개 계량평가 항목 및 6개 비계량평가 항목, 총 8개 항목

* (2021년) 2개 계량평가 항목 및 5개 비계량평가 항목, 총 7개 항목

주5) [평가등급] 5등급 체계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회사는 2022년 자체 자율진단 시행으로 결과공시 대상이 아님

2) 2021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항목별 평가결과 (2021년)
계량 지표	1	민원 사전예방 관련 사항	해당없음
	2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 관련 사항	해당없음
비계량 지표	3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 관련 사항	해당없음
	4	금융상품 개발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해당없음
	5	금융상품 판매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해당없음
	6	민원 관리시스템 및 소비자정보 공시 관련 사항	해당없음
	7	기타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해당없음

주1) [평가근거] (2021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 (2016년~2020년)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주2) [평가 대상회사]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손해보험업권 전체의 1% 이상인 손해보험사, 영업규모가 작거나 민원건수가 적은 회사는 해당년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대상회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매년 1개 그룹씩 나눠서 평가 (3년 주기 평가)

- 단, 전년도 실태평가 결과, 감독·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주기를 달리 운영할 수 있음

주3) [평가 대상기간] 계량평가 : 2020년 중 소비자보호활동

비계량평가 : 2020~2021년 6월 중 소비자보호활동

주4) [평가항목] 2개 계량평가 항목 및 5개 비계량평가 항목, 총 7개 항목

주5) [평가등급] 5등급 체계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회사는 2021년 자체 자율진단 시행으로 결과공시 대상이 아님

3) 2020년 평가결과

구 분		항목별 평가결과 (2020년)	
계량 항목	1	민원발생건수	양호
	2	민원처리노력	양호
	3	소송건수	보통
	4	영업 지속가능성	양호
	5	금융사고	양호
비계량 항목	6	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	양호
	7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양호
	8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양호
	9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보통
	10	소비자정보 공시	양호
종합 등급		양호	

- 주1) [평가근거] 금융소비자보호모범기준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음
- 주2) [평가 대상회사]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업권 전체의 1%이상인 회사로, 민원건수가 적거나 영업규모가 작은 회사는 해당년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주3) [평가 대상기간] 2019년 중 소비자보호 활동
- 주4) [평가항목] 5개 계량평가 항목 및 5개 비계량평가
- 주5) [평가등급] 5등급 체계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7-5 민원발생건수

* 대상기간 : 당분기 2023년 2분기(2023. 4. 1.~2023. 6. 30.)
전분기 2023년 1분기(2023. 1. 1.~2023. 3. 31.)

※ 동 민원건수는 중복반복민원, 단순상담 및 질의사항, 금감원 민원 中 자율조정성립건, 금감원 민원 中 B2B민원, 금감원 민원 中 소송관련 민원은 제외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대상기간
- 당분기 : 2023년 2분기(2023. 4. 1. ~ 6. 30.)
- 전분기 : 2023년 1분기(2023. 1. 1. ~ 3. 31.)

1) 민원 건수

구 분	민원 건수			환산건수 (보유계약 십만건 당)			비 고
	전분기	당분기	증감률 (%)	전분기	당분기	증감률 (%)	
자체민원	601	668	11.15	2.74	3.02	10.22	
대외민원	1,069	1,166	9.07	4.87	5.26	8.01	
합계	1,670	1,834	9.82	7.61	8.28	8.80	

주1) 금융감독원 등 타기관에서 접수한 민원 중 이첩된 민원 또는 사실조회 요청한 민원, 단 해당 기관에서 이첩 또는 사실조회 없이 직접 처리한 민원은 제외
주2) 해당 분기말일 회사 보유계약 건수를 기준으로 항목별 산출

2) 유형별 민원 건수

구 분	민원 건수			환산건수 (보유계약 십만건 당)			비 고
	전분기	당분기	증감률 (%)	전분기	당분기	증감률 (%)	
유 형	보험모집	162	160	-1.23	0.74	0.72	-2.70
	유지관리	198	203	2.53	0.90	0.92	2.22
	보상 (보험금)	1,171	1,395	19.13	5.34	6.30	17.98
	기 타	139	76	-45.32	0.63	0.34	-46.03
합계	1,670	1,834	9.82	7.61	8.28	8.80	

주) 해당 분기말일 회사 보유계약 건수를 기준으로 항목별 산출

3) 상품별 민원건수

구 분		민원 건수 ^{주3)}			환산건수 ^{주2)} (보유계약 십만건 당)			비 고
		전분기	당분기	증감률(%)	전분기	당분기	증감률(%)	
상 품	일반보험	98	73	-25.51	10.01	7.38	-26.27	
	장기 보장성보험	813	1,002	23.25	5.23	6.38	21.99	
	장기 저축성보험	12	8	-33.33	3.70	2.50	-32.61	
	자동차보험	640	705	10.16	12.60	13.75	9.13	
기타 ^{주1)}		107	46	-57.01	-	-	-	-

주1) 해당 회사의 내부경영(주가관리, RBC 등) 관련 민원, 모집수수료, 정비수가 등 소비자 외 모집인·정비업체 등이 제기하는 민원, 보험 가입전 상품 외 민원, 다수계약(가입상품 미한정) 가입자의 상품관련 외 민원 등

주2) 해당 분기말일 상품별 보유계약 건수를 기준으로 항목별 산출

주3) 대출관련 민원 : 보험계약대출 관련 민원은 해당 상품 기준으로 구분하되, 담보·신용대출 관련 민원은 기타로 구분

※ '기타' 구분은 상품 외 민원으로 보유계약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환산건수'를 표기하지 않음

※ '기타' 구분의 환산건수가 산정되지 않으므로 별도 '합계'를 표기하지 않으며, 상품별 '민원 건수'의 총 합계(일반보험+장기보장성보험+장기저축성보험+자동차보험+기타)는 '1. 민원건수', '2. 유형별 민원 건수'의 각 '합계'와 일치

7-6. 불완전판매비율, 청약철회비율 및 유지율 현황

(단위 : 건. %)

구 분	설계사	개인 대리점	법인대리점				직영	
			방카 ⁴	TM ⁵	홈쇼핑 ⁶	기타 ⁷	복합 ⁸	다이렉트 ⁹
< 불완전판매비율 ¹ >								
불완전판매비율	0.02%	0.02%	0.11%	0.02%	0.01%	0.01%	0.00%	0.00%
불완전판매건수	208	40	4	125	2	153	0	4
신계약건수	1,024,379	207,661	3,516	508,410	34,327	1,357,325	152	145,794
< 청약철회비율 ² >								
청약철회비율	2.44%	2.00%	4.61%	5.09%	7.53%	2.79%	13.82%	4.30%
청약철회건수	24,946	4,145	162	25,863	2,586	37,870	21	6,272
신계약건수	1,024,379	207,661	3,516	508,410	34,327	1,357,325	152	145,794

※ 신계약건수 대상 기간 : 22.7.1~23.6.30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설계사	개인 대리점	법인대리점				직영	
			방카 ⁴	TM ⁵	홈쇼핑 ⁶	기타 ⁷	복합 ⁸	다이렉트 ⁹
< 유지율 ³ >								
13회차	90.26	93.59	73.18	79.49	77.52	89.86	0.00	86.43
유지계약액	539,192	143,913	10,348	110,565	5,688	620,368	0	24,549
대상신계약액	597,360	153,764	14,141	139,091	7,337	690,398	0	28,405
25회차	77.91	81.66	54.29	62.96	68.87	76.80	0.00	75.24
유지계약액	460,000	130,423	7,919	79,951	5,657	590,801	0	21,796
대상신계약액	590,433	159,721	14,587	126,982	8,214	769,260	0	28,970
37회차	64.74	66.90	74.50	45.73	60.05	66.59	0.00	61.08
유지계약액	327,868	97,170	32,050	51,881	6,375	428,077	0	10,574
대상신계약액	506,444	145,242	43,020	113,454	10,616	642,829	0	17,313
61회차	40.19	44.68	31.55	24.87	36.28	39.62	0.00	39.10
유지계약액	133,898	45,293	10,759	21,632	6,013	134,460	0	7,546
대상신계약액	333,170	101,364	34,100	86,986	16,575	339,377	0	19,296

※ 대상신계약액 대상 기간 : 산출월 기준 각 회차별 이전년도 동월 신계약액
유지계약액 대상 기간 : 22.7.1~23.6.30

- 1) (품질보증해지+민원해지+무효)건수 / 신계약건수 × 100
- 2) (청약철회건수 / 신계약 건수) × 100
- 3) (유지계약액 / 대상신계약액) × 100
- 4)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
- 5) 전화 등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통신판매 전문보험대리점
- 6) 홈쇼핑사가 운영하는 보험대리점
- 7) 방카슈랑스, TM, 홈쇼핑을 제외한 법인대리점으로 일반적으로 대면모집 법인대리점
- 8) 대면모집과 비대면모집을 병행하는 보험회사 직영 모집조직(직영 TM설계사의 경우 직영다이렉트 조직에 포함하여 작성)
- 9) 통신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보험회사 직영 모집조직

7-7. 보험금 부지급률 및 청구이후 해지비율 현황

1) 장기손해보험

(단위 : 건, %)

보험금 부지급률 ¹	1.44	청구이후 해지비율 ²	0.16
보험금 부지급건수 ³	13,161	보험금 청구 후 해지건 ⁵	900
보험금 청구건수 ⁴	911,448	보험금 청구된 계약건 ⁶	558,399

※ 대상 기간 : 23.1.1~23.6.30

- 1) (보험금 부지급건수 / 보험금 청구건수) × 100
- 2) (보험금 청구 후 해지건수 / 보험금 청구 계약건수) × 100
*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행위가 없는 건 제외(만기보험금, 중도보험금, 만기환급금, 2회차 이후의 분할 보험금 등)
- 3) 보험금 청구 건수 중 보험금이 부지급된 건수(동일청구건에 지급과 부지급 공존시 지급으로 처리)
- 4) 직전 3개 회계연도의 신계약을 대상으로 산출대상기간(상반기의 경우 해당연도의 1.1~6.30을 말하며, 하반기의 경우 해당연도의 7.1~12.31을 말한다.)동안 보험금 청구권자가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지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건 중 지급심사가 동일기간내에 완료된 건수(사고일자 + 증권번호 + 피보험자 + 청구일자 기준*으로 산출)
* 동일한 사고라도 청구일자 상이한 경우, 별도 건으로 산출
- 5) 보험금 청구 계약건 중 보험금 청구 후 품질보증해지·민원해지 건수 및 보험금 부지급 후 고지의무 위반해지·보험회사 임의해지* 건수의 합계
* 계약자 임의해지 건 제외
- 6) 직전 3개 회계연도의 신계약 중 산출대상기간(상반기의 경우 해당연도의 1.1~6.30을 말하며, 하반기의 경우 해당연도의 7.1~12.31을 말한다.)동안 보험금 청구된 보험계약건(증권번호 기준, 중복 제외)

2) 자동차보험

(단위 : 건, %)

보험금 부지급률 ¹	0.49	청구이후 해지비율 ²	0.00
보험금 부지급건수 ³	3,119	보험금 청구 후 해지건 ⁵	1
보험금 청구건수 ⁴	630,347	보험금 청구된 계약건 ⁶	476,248

※ 대상 기간 : 23.1.1~23.6.30

- 1) (보험금 부지급건수 / 보험금 청구건수) × 100
- 2) (보험금 청구후 해지건수 / 보험금 청구 계약건수) × 100
- 3) 보험금 청구건수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건수
- 4) 산출대상기간(상반기의 경우 해당연도의 1.1~6.30을 말하며, 하반기의 경우 해당연도의 7.1~12.31을 말한다.)동안 보험금 청구권자(피해자, 피해물 소유주 및 피보험자)가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지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한 건 중 보험금 지급/부지급 여부가 확정된 건수(사고일자, 사고접수일자, 증권번호, 사고번호, 피해자(물) 및 피보험자 등 기준으로 산출)
* 피해서열별로 추산보험금을 책정한 건수를 기준으로 작성

** 보험금 청구 포기건 및 피구상건 제외(다만, 소송 및 금감원 분쟁조정 진행중인건은 포함)

5) 보험금 청구 계약건수 중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험계약 해지사유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의무보험을 포함하여 보험을 해지한 건수(증권번호 기준, 1년계약 기준)

* 다음의 경우는 해지건수에서 제외

1)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에 정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3)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에서 정하는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산출대상기간(상반기의 경우 해당연도의 1.1~6.30을 말하며, 하반기의 경우 해당연도의 7.1~12.31을 말한다.)동안 보험금 지급건수(B)가 1건 이상 발생한 보험계약 건수(증권번호 기준, 1년계약 기준, 중복 제외)

7-8. 사회공헌활동

7-8-1. 사회공헌활동 주요현황

(단위: 백만원, 시간, 명)

구분	사회공헌 기부금액	전담 직원수	내규화 여부	봉사인원		봉사시간		인원수		당기 순이익
				임직원	설계사	임직원	설계사	임직원	설계사	
2Q 누적	2,116	3	○	2,328	-	5,400	-	4,639	22,235	918,128

7-8-2. 분야별 사회공헌활동 세부내용

(단위: 백만원, 시간, 명)

분야	주요 사회공헌활동	기부(집행)금액	자원봉사활동			
			임직원		설계사	
			인원	시간	인원	시간
지역사회.공익	소외계층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	682	1,608	3,960	-	-
문화.예술.스포츠	문화, 스포츠 분야 지원	481				
학술.교육	학술 포럼 지원	521				
환경보호	환경정화활동 등	17	720	1,440		
글로벌 사회공헌		-				
공동사회공헌	손보협회 사회공헌분담금	307				
서민금융	새희망힐링펀드	109				
기타	-	-				
총 계		2,116	2,328	5,400		

* 2023년 2분기 누적실적 기준임

7-9. 손해사정업무 처리현황

○ 기간 : 2023.1.1.~2023.6.30

(단위 : 건, 천원, %)

회사명	위탁 업체명 ^{주1)}	종 구분	계약 기간	총 위탁 건수 ^{주2)}	총 위탁 수수료	위탁 비율 (%) ^{주3)}	지급 수수료 비율 (%) ^{주4)}
DB 손해 보험	인스비전손해사정	정보입력	23.01.01~23.12.31	1,990,211	2,138,706	14.65%	1.50%
	에이원심사손해사정	정보입력	23.01.01~23.12.31	749,740	850,151	5.52%	0.60%
	다스카손해사정	정보입력	23.01.01~23.12.31	654,506	751,473	4.82%	0.53%
	리더스손해사정	정보입력	23.01.01~23.12.31	628,422	715,384	4.62%	0.50%
	파란손해사정	정보입력	23.01.01~23.12.31	469,331	538,011	3.45%	0.38%
	DB CAS(자회사)	정보입력	23.01.01~23.12.31	463,951	579,004	3.41%	0.41%
	케이엠손해사정	정보입력	23.01.01~23.12.31	411,646	462,263	3.03%	0.32%
	미래손해사정	정보입력	23.01.01~23.12.31	391,174	438,902	2.88%	0.31%
	해오름손해사정	정보입력	23.01.01~23.12.31	323,065	362,574	2.38%	0.25%
	해성손해사정	정보입력	23.01.01~23.12.31	307,303	344,029	2.26%	0.24%
	탑손해사정	정보입력	23.01.01~23.12.31	126,341	140,025	0.93%	0.10%
	국제손해사정	정보입력	23.01.01~23.12.31	20,523	22,493	0.15%	0.02%
	DB CAS(자회사)	4종	23.01.01~23.12.31	1,600,152	23,296,271	11.78%	16.35%
	에이원심사손해사정	4종	23.01.01~23.12.31	896,236	2,728,227	6.60%	1.92%
	리더스손해사정	4종	23.01.01~23.12.31	673,135	2,305,276	4.95%	1.62%
	베스트손해사정	4종	23.04.01~23.12.31	16,087	75,624	0.12%	0.05%
	C&S손해사정	4종	23.01.01~23.12.31	1,072	298,168	0.01%	0.21%
	타임즈손해사정	4종	23.01.01~23.12.31	558	158,156	0.00%	0.11%
	TSA손해사정	4종	23.01.01~23.12.31	314	93,230	0.00%	0.07%
	유니온손해사정	4종	23.01.01~23.12.31	307	82,953	0.00%	0.06%
	프라임손해사정	4종	23.01.01~23.12.31	256	68,981	0.00%	0.05%
	유월비손해사정	4종	23.01.01~23.12.31	207	55,038	0.00%	0.04%
	에이플러스손해사정	4종	23.01.01~23.12.31	196	56,180	0.00%	0.04%
	DB자동차보험손해사정 (자회사)	3종	23.01.01~23.12.31	692,445	55,922,422	5.10%	39.26%
	한서 손해사정(주)	2종	23.04.01~24.03.31	44	55,714	0.00%	0.04%
	한결 손해사정(주)	2종	23.04.01~24.03.31	38	91,207	0.00%	0.06%

모든 손해사정(주)	2종	23.04.01~24.03.31	34	142,631	0.00%	0.10%
한일 손해사정(주)	2종	23.04.01~24.03.31	28	74,010	0.00%	0.05%
새한 손해사정(주)	2종	23.04.01~24.03.31	28	127,902	0.00%	0.09%
한바다 손해사정(주)	2종	23.04.01~24.03.31	22	41,359	0.00%	0.03%
한리 손해사정(주)	2종	23.04.01~24.03.31	10	39,987	0.00%	0.03%
푸름 손해사정(주)	2종	23.04.01~24.03.31	9	14,110	0.00%	0.01%
네스코 손해사정(주)	2종	23.04.01~24.03.31	5	9,600	0.00%	0.01%
전한 손해사정(주)	2종	23.04.01~24.03.31	2	38,936	0.00%	0.03%
이룸손해사정(주)	1종	23.04.01~24.03.31	20,006	2,621,646	0.15%	1.84%
다해손해사정(주)	1종	23.04.01~24.03.31	4,431	132,930	0.03%	0.09%
한국손해사정(주)	1종	23.04.01~24.03.31	845	493,337	0.01%	0.35%
고려손해사정(주)	1종	23.04.01~24.03.31	680	478,320	0.01%	0.34%
인코크손해사정(주)	1종	23.04.01~24.03.31	550	450,994	0.00%	0.32%
케이원손해사정(주)	1종	23.04.01~24.03.31	382	223,865	0.00%	0.16%
김스코손해사정(주)	1종	23.04.01~24.03.31	359	288,930	0.00%	0.20%
세종손해사정(주)	1종	23.04.01~24.03.31	346	262,060	0.00%	0.18%
이앤에스손해사정(주)	1종	23.04.01~24.03.31	344	258,336	0.00%	0.18%
세계손해사정(주)	1종	23.04.01~24.03.31	321	189,320	0.00%	0.13%
피에스엘손해사정	1종	23.04.01~24.03.31	253	130,737	0.00%	0.09%
중앙손해사정(주)	1종	23.04.01~24.03.31	170	112,469	0.00%	0.08%
태양손해사정(주)	1종	23.04.01~24.03.31	106	91,327	0.00%	0.06%
드림손해사정	1종	23.04.01~24.03.31	66	39,940	0.00%	0.03%
진손해사정	1종	23.04.01~24.03.31	47	31,139	0.00%	0.02%
티앤지손해사정(주)	1종	23.04.01~24.03.31	26	12,540	0.00%	0.01%
대양화재특종 손해사정(주)	1종	23.04.01~24.03.31	8	4,963	0.00%	0.00%
태평양손해사정(주)	1종	23.04.01~24.03.31	7	4,288	0.00%	0.00%
카스코손해사정(주)	1종	23.04.01~24.03.31	6	2,743	0.00%	0.00%
코마손해사정(주)	1종	23.04.01~24.03.31	5	2,930	0.00%	0.00%
보람손해사정(주)	1종	23.04.01~24.03.31	4	2,390	0.00%	0.00%
에스에이에스 손해사정(주)	1종	23.04.01~24.03.31	4	2,382	0.00%	0.00%
인스비전손해사정(주)	1,4종	1종:23.04.01~24.03.31 4종:23.01.01~23.12.31	726,622	2,323,103	5.35%	1.63%
파란손해사정(주)	1,4종	1종:23.04.01~24.03.31	421,781	2,033,908	3.10%	1.43%

		4종:23.01.01~23.12.31					
해성손해사정(주)	1,4종	1종:23.04.01~24.03.31 4종:23.01.01~23.12.31	368,987	2,343,629	2.72%	1.65%	
다스카손해사정(주)	1,4종	1종:23.04.01~24.03.31 4종:23.01.01~23.12.31	343,510	1,867,625	2.53%	1.31%	
미래손해사정(주)	1,4종	1종:23.04.01~24.03.31 4종:23.01.01~23.12.31	282,778	1,791,903	2.08%	1.26%	
DB CSI(자회사)	1,4종	1종:23.01.01~23.12.31 4종:23.01.01~23.12.31	269,366	25,702,585	1.98%	18.04%	
케이엠손해사정(주)	1,4종	1종:23.04.01~24.03.31 4종:23.01.01~23.12.31	242,746	948,955	1.79%	0.67%	
해오름손해사정(주)	1,4종	1종:23.04.01~24.03.31 4종:23.01.01~23.12.31	143,271	1,164,263	1.05%	0.82%	
탑손해사정(주)	1,4종	1종:23.04.01~24.03.31 4종:23.01.01~23.12.31	94,788	1,118,705	0.70%	0.79%	
Hits손해사정	1,4종	1종:23.04.01~24.03.31 4종:23.01.01~23.12.31	93,867	849,987	0.69%	0.60%	
에이원손해사정(주)	1,4종	1종:23.04.01~24.03.31 4종:23.01.01~23.12.31	11,801	1,125,370	0.09%	0.79%	
아세아손해사정(주)	1,4종	1종:23.04.01~24.03.31 4종:23.01.01~23.12.31	1,594	508,443	0.01%	0.36%	
클라우드손해사정(주)	1,4종	1종:23.04.01~24.03.31 4종:23.04.01~23.12.31	884	30,276	0.01%	0.02%	
솔로몬손해사정(주)	1,4종	1종:23.04.01~24.03.31 4종:23.01.01~23.12.31	504	283,328	0.00%	0.20%	
서울손해사정(주)	1,4종	1종:23.04.01~24.03.31 4종:23.01.01~23.12.31	95	30,633	0.00%	0.02%	
국제손해사정(주)	1,2,4종	1,2종:23.04.01~24.03.31 4종:23.01.01~23.12.31	138,903	1,366,966	1.02%	0.96%	
총계	-	-	13,587,861	142,446,262	100.00%	100.00%	

- 주1) 위탁업체가 자회사인 경우 위탁업체명에 자회사임을 별도로 명기
주2) 업무위탁이 종결되어 수수료 지급 완료된 건 기준으로 작성
주3) 위탁비율 = 업체별 총 위탁 건수 / 전체 위탁건수
주4) 지급수수료 비율 = 업체별 총 수수료 지급액 / 전체 수수료 지급액

7-10. 손해사정사 선임 등

1)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 선임거부 건수 및 사유

○ 기간 : 2023.1.1.~2023.6.30.

①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선임 거부 건수

(단위: 건)

구 분	연도(당해연도)		연도(전년도)	
	선임 요청 건수	선임 거부 건수	선임 요청 건수	선임 거부 건수
상반기	21	0	7	0
하반기				
연도 전체				

주1) 대상 : 보험금이 청구된 건 중 손해사정 대상 건

주2) 선임 요청 건수 :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안내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선임 관련 의사를 표시한 건수

주3) 선임 거부 건수 : 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선임을 요청하였으나 보험회사가 동의 거부한 건수

※ 상반기 공시자료의 경우 상반기만 표시(표에서 하반기, 연도전체 생략) 하여 작성

2) 선임 동의 기준(2023년 8월 21일 현재)

※ 회사별 선임동의 기준 기입(반기공시 10일 전 기준)

- 별첨 참조

I. 제정배경

1.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및 손해보험협회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2020년 1월 1일 시행)에 근거함
2. 실손의료비 단독 청구권 확대운영을 통해 동의기준을 점차 보완 확대할 예정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②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의한다.

1.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 (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생략>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협회는 제2항 제1호에 따른 동의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동의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II. 손해보험 공통

다음의 보험사고에 관한 손해사정은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은 거부할 수 있음

- 화재보험계약, 해상보험계약 (항공/운송보험계약을 포함한다), 자동차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책임보험계약, 기술보험계약, 권리보험계약, 도난보험계약, 유리보험계약, 동물보험계약, 원자력보험계약, 비용보험계약, 날씨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사고

- 배상책임의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청구권자간의 보험금 지급 여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 재물보험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에 즉시 착수하지 않으면 손해액 증가 또는 보험목적물의 추가 훼손의 우려가 있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을 거부함

손보험회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제6항에 따라 제정 운영)

제5조(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 운영 등)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한 경우 동의 여부 결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1. 보험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문보험계약자의 계약. 다만, 실손의료보험계약을 포함하는 단체보험상품 및 여행보험상품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보험업법시행령 제1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보험계약
3.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정한 동의 기준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보험업법시행령 제1조의2제3항

법 제2조제1호나목(손해보험상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화재보험계약
2. 해상보험계약 (항공·운송보험계약을 포함한다)
3. 자동차보험계약
4. 보증보험계약
5. 재보험계약
6. 책임보험계약
7. 기술보험계약
8. 권리보험계약
9. 도난보험계약
10. 유리보험계약
11. 동물보험계약
12. 원자력보험계약
13. 비용보험계약
14. 날씨보험계약

III. 제3보험

실손의료비 단독청구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을 거부할 수 있음

- 사망, 후유장해, 진단비, 수술비 보험금 산정에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가 아닌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이 달라지고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초과, 과소산정 민원이 빈번이 발생하고
- 지급보험금에 따른 성공보수를 별도로 약정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거부함

IV. 실손의료비 단독 청구건 동의 기준

1. 실손의료비 단독 청구건의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동의하여야 함. 다만 아래의 거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실손의료비 담보 단독 청구건의 선임 거부 기준

- 청구서류 만으로 심사가 가능하여 조사나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
- 실손의료비 단독청구건이라 주장한다 하더라도 진단비, 수술비, 일당, 후유장해 등 정액 담보의 손해사정이 함께 필요한 경우
(예: 실손의료비만을 청구하였으나 진단비에 대한 지급 사유 조사가 필요한 경우)
- 병원과 관련한 비급여 등의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 보험사기, 모럴해저드, 역선택과 관련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손해사정보고서 작성이 불필요한 단순 차트 및 소견서 청구 의뢰건

1. 손해사정사 재선임 대상

(선임 거부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선임된 손해사정사가 기준에 부적합하여 재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손해사정사가 4종/신체 손해사정 영업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손해사정사가 한국손해사정사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업체가 아닌 경우
- 손해사정사가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칠 소지가 있는 경우

손보험회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제6항에 따라 제정 운영)

제8조(실손의료보험 담보에 대한 특례)

- ① 실손의료보험 담보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청구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청구권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단, 진단비, 수술비, 일당, 후유장해 등 정액 담보 보험금과 함께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서류 심사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여 조사나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선임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담보에 대해 제5조제1항의 동의기준보다 완화된 별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VIII. 재무제표

- 상세 재무제표(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는 첨부파일 참조

□ 경영, 자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계처리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준비사항 및 영향 분석

: 금융감독원은 당반기 중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산출 및 수익인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국내 보험회사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2023년 6월말 결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보험계약마진의 수익인식 가이드라인을 당반기 재무제표에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무저해지보험의 계리적가정 적용,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가정 적용 및 위험조정 수익인식 가이드라인은 당반기 현재 미반영 상태이며,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